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434

제출년월일 : 2001. 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 부서 : 기 획 관 리 과☐ 제안이유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지 출 건 수 : 1건
- 지출결정액 : 28,469,000원
- 지 출 액 : 28,468,890원
- 잔 액 : 110원
- 지출사항
 - 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1심판결 확정에 따른 구상금 28,468,890원

☐ 예비비지출내역

(단위:원)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구상금 지급	2000. 2. 17.	28,469,000	28,468,890	11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계		28,469,000	28,468,890	110	

☐ 예비비사용명세서 : 별첨

2000 예비비 사용 명세서

(단위:원)

과 목						예 비 비 지출결정액	예 비 비 사 용 액	잔액	비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교 육 행정	교육청	교육청 운 영	법무 관리	경 상 사업비	배상금	28,469,000	28,468,890	110	
합 계						28,469,000	28,468,890	110	

□ 예비비지출 사유

- 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 확정에 따른 구상금
 - 1998. 9. 8. 16:05경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유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이재진(남, 6세)어린이가 학교통학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다 학교통학버스를 추월하여 달리던 승용차에 반회 1998. 9. 18. 사망한 사건으로,
 - 본 사고차량은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보험회사에서는 이재진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98,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재진의 치료비와 변호사비 10,306,180원을 지급하였음
 - 이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당시 학교통학버스에 어린이의 하차 및 도로 횡단 등을 보살피 줄 교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학교통학버스를 운행한 과실과 교사가 별도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버스 운전사가 그 임무를 보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이재진의 하차 및 도로횡단을 보살피 주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용차와 학교통학버스의 책임 분담비율은 3 : 1의 판결로 보험회사에서는 병설유치원 설치·감독자인 충청북도교육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 교육청에서는 보험회사측이 이재진 부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치료비, 변호사비 등 총액의 1/4인 27,076,540원과 지연이자 및 수수료 1,392,350원 등 28,468,890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 구상금으로 지급하였음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361-703 /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사남동 4-11/ 전화 (043)290-1229 / 전송(043)292-1525
의사과 과장 이상기 의사담당 김왕년 담당자 임재혁

문서번호 의사 81433 - 198

시행일자 2001. 6. 23.

(공개여부) 공 개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2001. 6. 23.		
	번호	26911	결재	
처리과			공람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목 의안이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6. 23.)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129-1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원안가결
129-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129-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
129-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29-5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붙임 : 의안 각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장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01-51 호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23일

충청북도교육청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0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902,507,426,740원, 세출결산액은 783,863,336,37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9,794,056,62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8,782,664,750원, 국고보조금잔액은 67,369,000원으로서 총 118,644,090,37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지 출 건 수 : 1건 ○ 지출결정액 : 28,469,000원 ○ 지 출 액 : 28,468,890원 ○ 잔 액 : 110원 ○ 지 출 사 항 - 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 확정에 따른 구상금 28,468,890원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예관한 조례안	○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안시 입법예고 실시(안 제3조)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행정심판, 5. 지방시험, 6. 정보화관련제도 7. 기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 입법예고의 예외(안 제4조) ○ 입법예고문 작성 및 입법예고 방법(안 제5조 및 제6조) ○ 의견제출 및 처리(안 제9조) ○ 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공공시설 위탁관리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에게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 심의범위 확대 및 행정사무 간소화(안 제7조) - 공유재산심의범위 확대 · 필요할 경우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확정 심의 - 공유재산 심의 생략 규모 조문 정리 ·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및 대장가 1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임대료의 탄력적 적용(안 제23조) - 일 반 재산평가액의 5% → 5%이상 - 공공용 재산평가액의 2.5% → 2.5%이상 - 경작용 재산평가액의 1% → 1%이상 등으로 정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집중지역 분산효과(안 제23조) -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 이전시 대부요율 인하 ·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 ○ 전세권 조항 신설(안 제25조의 2)